

# 행 정 자 치 부

## 통 보

제 목 행정재산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강원도에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를 근거로 강원도 향토공예관(행정재산)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,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같은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내지 제8항에 따르면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제10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·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

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하며,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를 준용하고,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「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,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 할 수 있고,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전대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부과·징수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.

또한 관리수탁자가 위·수탁계약에 따라 사용·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대하여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없고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강원도에서는 [표 1] 과 같이 ○○○○○○○강원지역본부장과 강원도○○○○○ 관리·운영 위탁계약을 체결(2012. 12. 27.)하면서 위·수탁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면서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여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처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[표 2]와 같이 수탁자가 전대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산출하지 않고 제3자와 ‘임대차계약서’를 임의 작성하여

월 임대료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게 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행정재산 관리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 1] 행정재산(향토공예관) 관리위탁 부당계약 명세

시설명	위탁기간	수탁자	사용료	계약금액	부당계약내용
강원도 ○○○○○	'13.1.1-'17.12.31 (5년간)	○○○○○○○ 강원지역본부	없음	500백만원 (도비 보조금 50%, 수탁자 부담금 50%)	제3자 전대에 따른 사용료(임대료)를 자체수익금으로 처리

[표 2] 관리위탁재산 제3자 전대에 따른 사용료 부적정 산정 명세 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입주기관	사용면적	사용기간	사용료	산출근거 및 계약방법	사용료귀속
총 계			월 5,317 연63,800		
○○○○○○○	127.80	'16.1.1-'16.12.31	월 683 연 8,192	○ 1985년 8월 7일 기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이후 매년 물가상승분 적용 - 통계청 자료 활용 ○ 월임대료를 납부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	관리수탁자 (○○○○○○○ ○○지역본부)
○○○○○○○○○	601.10	'16.1.1-'16.12.31	월 3,484 연41,808		
○○○○○○○○○	33.00	'16.3.14-'17.3.13	월 150 연 1,800		
강원○○○○○○○○○ 지원센터	112.22	'16.9.1-17.8.31	월 350 연 4,200		
한국○○○○○○○○○ 협회강원연합회	33.00	'16.7.20-'17.7.19	월 150 연 1,800		
○○○○○○○	127.80	'16.3.10-'17.3.9	월 500 연 6,000		

※ 감사일 현재 입주단체 기준, 최근 임대차 계약 현황임

##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가 위·수탁계약에 따라 사용·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, 이 건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